

의안번호	제 38 호
의결	2018. 08. 23.
(보고)	(제13회)

과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정보통신관
제출연월일	2018.08.20.

과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7.3.21) 및 시행(2017.8.9)되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변경

- 「과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과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규정 마련(안 제3조)

- 시장은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종합계획과 과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다. 도시정보센터 설치(안 제4조)

- 스마트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및 확장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

라.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11조)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기관, 부서, 실무담당자 협의체 구성

개정조례안: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8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 「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5. 29 ~ 6. 18 (20일 이상)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스마트도시서비스(이하 “스마트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 정보화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정보센터의 설치)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인 파주시 도시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한다. 이 경우,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기능 확보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및 서비스제공 등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조직을 두거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서비스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스마트도시 관련 국장

2. 스마트도시 관련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사업시행자

다.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마.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① 협의회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보보호 등) 시장은 스마트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연임제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및 이미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통합센터는 제4조에 따른 도시정보센터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본다.

소관 부서		정보통신관 ☎ 940-8721
입안자	정보통신관	이 승 조
	도시정보팀장	남 효 정
	담당자	이 병 수

신 · 구조문 대비표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 된 시설 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도시통합네트워크 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을 말한다. 3.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문화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정보를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제]</p>
---	--

수집·연계·제공하는 고도화·지능화된 서비스를 말한다.

4.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이란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이란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제3조(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구축) ①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한다.

② 기 운영중이거나 유사한 관련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로 이동]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 스마트도시 서비스(이하 “스마트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 정보화 내용을

제4조(통합센터 기능)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능화된 통합센터를 구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수정: “통합센터”▶“도시정보센터”]

[②항 신설: 센터의 구축 방향 제시]

[수정 : “유비쿼터스도시” ▶ “스마트도시”]

1.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련 시설
통합 관리·운영 및 기능 확보
2.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및
서비스 제공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 장비 및
시설물 관리·운영
4. 센터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구성
할 수 있다.[제6조①항에 통합]

②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운영에 소요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정보센터의 설치) ① 제19조의
5에 따라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인 파주시 도시정보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제3조①항 수정]

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
하도록 구축한다. 이 경우,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3조②항 수정]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기능 확보
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및
서비스제공 등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 시설물 관리·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수정]

제6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①항, ②항 수정]

되는 예산의 수립과 장기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 한다.

[제6조 ①항에 포함]

- ③ 콜센터, CCTV 단순관제, 시설유지보수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전문 운영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②항 내지 ③항으로 세분화]

- ④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유관기관(경찰,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6조③항 수정]

제6조(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

[신설: 협의회 설치에 대한 사항 추가]

- ①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 ② 시장은 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조직을 두거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5조③항 세분화]

-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서비스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④항 수정]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7조 각호 수정]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①항 수정]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 위촉직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제8조②항 수정]

③ 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제8조③항 수정]

1. 유관기관 공무원
2. 시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5.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⑤항 수정]

⑤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해당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촉한다.

[제8조③항 수정]

1. 해당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을 감리하는 감리시행자
2.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의 해당 서비스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특별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아니하도록 한다.[제6조①항 수정]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제6조②항 수정]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스마트도시 관련 국장
2. 스마트도시 관련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 나. 사업시행자
 - 다.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 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 마.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6조③항,⑤항 수정]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6조④항 수정]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④항 수정]

인정되는 사람

-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⑥항 수정]

- 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유비쿼터스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제10조④항 수정]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8조①항 포함]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수정]

[제7조로 이동]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 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제6조②항 수정]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②항 수정]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10조①항 수정]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②항 수정]

제9조(협의회 수당) 파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①항 수정]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②항 수정]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⑤항 수정]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제6조⑦항 수정]

[삭제]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① 협의회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신설]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제10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위원, 운영
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보호) 시장은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
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시장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과 협의회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제12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 위원, 운
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보보호) 시장은 스마트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연임제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및 이미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통합
센터는 제4조에 따른 도시정보센터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본다.

□ 관계법령발췌서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3.21]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⑥ 삭제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과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과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 주민
5. 지방세 등 체납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3.7.26)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제4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과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12-29 조례 제852호

· 개정 2011-06-17 조례 제9632호(과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 된 시설 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을 말한다.

3.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문화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고도화·지능화된 서비스를 말한다.

4.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이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이란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구축) ①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한다.

② 기 운영중이거나 유사한 관련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통합센터 기능)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능화된 통합센터를 구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련 시설 통합 관리·운영 및 기능 확보
2.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및 서비스 제공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 장비 및 시설물 관리·운영
4. 센터시설 및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통합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수립과 장기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

③ 콜센터, CCTV 단순관제, 시설유지보수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전문 운영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유관기관(경찰,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 ①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 위촉직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 공무원
2. 시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5.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해당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을 감리하는 감리시행자
 2.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의 해당 서비스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특별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유비쿼터스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 수당) 과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등) 협의회위원,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보호) 시장은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시장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과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경기파주019		
정책명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정보통신관	
	담당자명	이병수	전화번호 031-940-872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5월 1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정보통신관)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 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 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5월 29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정보통신관장 귀하			



파 주 시



수신 정보통신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보통신관-11209(2018. 5. 16.)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 제명 변경 : (당초) 「파주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 「파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규정 마련(안 제3조)
- 도시정보센터 설치, 기능, 관리·운영(안 제4~6조)
-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설치·기능, 구성, 직무, 회의 등(안 제7~10조)
-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11조)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상위법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전부개정으로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과 도시정보센터 관리·운영 및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Handwritten signature)*

주무관	김정은	규제개혁팀장	백운화	소통법무관	2018. 5. 17. 이기용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4603	(2018. 5. 17.)	접수	정보통신관-11382	(2018. 5. 17.)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